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바젤Ⅲ 규제개혁 완료

□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2017.12.7일(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ECB)에서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이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바젤Ⅲ 규제개혁이 완료됨

* 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금번 GHOS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잔여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의 강건성(robustness)과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
-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개선하여 부도사례가 적은 자산에 대한 고급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
-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를 개정하여 내부모형법 사용을 불허하고 개선된 표준방법을 도입
-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한 새로운 표준방법을 개발

문의처 :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팀장 김주현, 과장 박정필, 과장 나성오

Tel: (02) 750-6829, 6835, 6838 Fax: 750-6856 E-mail: bokbcbs@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레버리지비율 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G-SIB)에 대해 추가 레버리지비율을 부과
- 내부모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표준방법 대비 72.5%이 되도록 자본하한(output floor)를 설정
-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상기 잔여 규제개혁 이행 시점을 2022.1.1일로 하고 5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함
- 이와 함께 GHOS는 BCBS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의 이행 시점을 당초 2019년에서 2022.1.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승인

(붙임)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개요

I

既완료된 바젤Ⅲ 규제개혁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바젤Ⅲ 규제체계**는 기존 규제체계의 **단점을 완화**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하여 **시스템적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既완료된 규제개혁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은행의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해 보통주 중심으로 규제자본의 질을 개선
 - ② 은행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을 보유토록 하기 위해 규제자본의 양을 확대
 - ③ 시장리스크,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자산유동화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리스크 포착 능력을 개선
 - ④ 완충자본*, 거액익스포저 규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추가
 - * 호황시에는 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본 적립 의무를 해제하여 신용공급의 경기순응성을 완화
 - **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심화 및 특정 차주에 대한 익스포저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
 - ⑤ 은행시스템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하고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본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마련
 - ⑥ 유동성 경색 및 만기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도입

1.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 (개요) **신용리스크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 SA)은 익스포저 금액에 위험가중치(바젤II에서는 외부신용등급에 따라 0~1,250% 적용)를 곱하여 자기자본비율의 분모 중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text{BIS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 보유량}}{\text{위험가중자산(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운영리스크)}} \geq 8\%$$

- (주요 개선내용) 대다수 은행들이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활용하고 있는 **표준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

① 위험가중치 세분화(**granularity**) 및 리스크 민감도(**risk sensitivity**) 제고*

* 예 : 바젤II에서 35%의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하던 주거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

②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 은행의 차주 심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고 **무등급 차주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차주 심사 결과는 신용등급 대비 신용리스크가 높은 경우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무등급 차주(해당국 감독당국이 신용등급 사용을 불허한 경우 포함)를 A/B/C 등급으로 구분하여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

③ 은행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공정여건 개선에 활용 : 표준방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한편 **자본하한 산출 기준**으로 활용

바젤 II·III 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비교*

* 이하 표내에 표시된 비율(%)은 위험가중치(risk weight, RW)를 의미하며 은 바젤 II(현행) 대비 신설·변경된 내용을 표시

1 은행 익스포저

·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사용이 가능한 경우(외부평가법)

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 미만	無등급
현행	국가 신용등급 ¹⁾	20%	50%	100%	100%	150%	100%
	은행 신용등급	20%	50%	50%	100%	150%	100%
바젤III	외부평가법(ECRA)	20%	30%	50%	100%	150%	표준평가법

단기 익스포저(대출만기 연장조건이 없는 원만기 3개월(무역금융은 6개월) 이내 익스포저)

현행	은행 신용등급	20%	20%	20%	50%	150%	20%
바젤III	외부평가법(ECRA) ¹⁾	20%	20%	20%	50%	150%	표준평가법

주: 1) 바젤II에서는 감독당국 재량으로 은행 익스포저에 소재 국가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바젤III에서는 국가 신용등급 적용을 불허

·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거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 <신설>

표준평가법(SCRA) ¹⁾	A 등급	B 등급	C 등급
기본 위험가중치	40% / 30% ²⁾	75%	150%
단기 익스포저	20%	50%	150%

주: 1) 바젤III에서는 신용등급이 없는 은행 또는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 또는 해당 국가가 외부 신용등급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 해당 차주의 신용도 심사 결과에 따라 A/B/C 등급으로 구분하여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차주 은행이 A 등급에 해당하면서 ① CET1 자본비율 14% 이상 ② Tier1 레버리지비율이 5% 이상인 우량 은행인 경우 30%의 우대 위험가중치를 적용

· 커버드본드(이중상환조건부 채권) 익스포저 <신설>

- 발행물 등급이 있는 경우(커버드본드의 발행물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

발행물 등급	AAA~AA-	A+~BBB-	BB+~B-	B- 미만
바젤III	10%	20%	50%	100%

- 발행물 등급이 없는 경우(발행은행의 위험가중치에 따라 차등 적용)

발행은행의 위험가중치	20%	30%	40%	50%	75%	100%	150%
바젤III	10%	15%	20%	25%	35%	50%	100%

② 기업 익스포저

·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사용이 가능한 경우

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B-	BB- 미만	無등급
현 행	20%	50%	100%		150%	100% ¹⁾
바젤Ⅲ	20%	50%	75%	100%	150%	100%/85% ²⁾

주 : 1) 바젤Ⅱ에서는 無등급 기업 익스포저에 대해 100%의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
 2) 無등급 중소기업 익스포저에 대해서만 85% 위험가중치 적용

·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 <신설>

표준평가법(SCRA)	투자적격 등급	기타
일반기업	65%	100%
중소기업	85%	

· 특수금융¹⁾(specialised lending) <신설>

익스포저(부동산 이외)		프로젝트금융	오브젝트금융	상품금융
현 행		기업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		
바젤Ⅲ	신용등급 사용 가능	기업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		
	신용등급이 없거나 사용 불허	개발단계 : 130% 운영단계 : 100%/80%(우량)	100%	100%

주 : 1) 특정 자산의 매입·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SPE)에 대한 여신으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대출금 담보 및 대출상환 재원으로 활용되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프로젝트금융(도로 등), 오브젝트금융(선박 등) 및 상품금융(금속 등)으로 구분

③ 부동산담보 익스포저

· 주거용 부동산담보 익스포저

현 행		35%(담보력이 충분한 경우)						
바젤Ⅲ	LTV	50% 미만	50~60%	60~80%	80~90%	90~100%	100% 초과	기타
GRRE ¹⁾	단일 위험가중치	20%	25%	30%	40%	50%	70%	RW_{차주}
	대출분할 ³⁾ (loan splitting)	20%		RW_{차주}				RW_{차주}
IPRRE ²⁾	단일 위험가중치	30%	35%	45%	60%	75%	105%	150%

주 : 1) 일반 주거용 부동산담보 익스포저(general residential real estate exposure, GRRE)
 2) 수익형 주거용 부동산담보 익스포저(income producing residential real estate exposure, IPRRE)
 3) 부동산 담보 익스포저를 분할한 후 해당 자산가액의 55%(타기관 보유 선순위 채권 제외)까지는 담보분으로 간주하여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무담보 잔여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

· 상업용 부동산담보 익스포저

현 행		100%(단, 선진화된 시장에서 LTV가 50%~60% 미만인 경우 50%)			
GCRE ¹⁾	단일 위험가중치	LTV ≤ 60%		LTV > 60%	
		Min [60%, RW _{차주}]		RW _{차주}	
	대출분할 (loan splitting)	LTV ≤ 55%		LTV > 55%	
		Min [60%, RW _{차주}]		RW _{차주}	
IPCRE ²⁾	단일 위험가중치	LTV ≤ 60%	60% < LTV ≤ 80%	LTV > 80%	기타
		70%	90%	110%	150%
ADC ³⁾	기업/SPV 대출	150%			
	주거용 ADC 대출	100%			

주 : 1) 일반 상업용 부동산담보 익스포저(general commercial real estate exposure, GCRE)
 2) 수익형 상업용 부동산담보 익스포저(income producing commercial real estate exposure, IPCRE)
 3) 부동산 개발사업 익스포저(land acquisitio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DC)

4] 소매 익스포저

	적격 소매 ¹⁾ (리볼빙 제외)	적격 소매(리볼빙 ²⁾)		기타 소매
		구매대금 (transactors)	자금조달 (revolvers)	
현 행	75%	75%	75%	100%
바젤III	75%	45%	75%	100%

주 : 1)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리스 등의 차주별 합계 금액이 100만유로 이하이면서 전체 소매 익스포저의 0.2% 이하인 경우
 2)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매월 대금 결제시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 만큼만 결제하는 방식

5] 주식 및 후순위 익스포저

	후순위	특정 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식 ¹⁾	여타 주식	투기목적 비상장주식
현 행	100%(단, 개별 금융기관의 보통주자본의 10%에 대해 250% 적용)			
바젤III	150%	100%	250%	400%

주 : 1) 정부의 감독 하에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은행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은행 총자본의 10% 이하 보유분에 한함

6] 난외항목 신용환산율

	항시 취소가능약정	기타 약정	증권발행보증 등	단기 무역신용장	기 타
현 행	0%	만기 ≤ 1년 : 20% 만기 > 1년 : 50%	50%	20%	100%
바젤III	10%	40%	50%	20%	100%

③ 국가간·은행간 위험가중자산 편차 축소를 위한 추가 조치 : 고급내부 등급법 사용 제한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내부등급법의 고정 모수값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예 : 非금융자산 담보부 대출에 대한 LGD 계산방식 조정, 무담보부 기업 익스포저에 대한 LGD 하향 조정(45% → 40%) 등

익스포저별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¹⁾

익스포저		현행		바젤Ⅲ	
		기본	고급	기본	고급
기업 익스포저	대기업·중견기업 ²⁾	○	○	○	X
	중소기업 ³⁾	○	○	○	○
	특수금융 ⁴⁾	○	○	○	○
	비은행금융기관	○	○	○	X
은행 익스포저		○	○	○	X
주식 익스포저		○	○	X	X
소매 익스포저		○	○	○	○

주 : 1) ○는 허용, X는 불허를 의미

2) 바젤Ⅱ에서는 대기업 분류 기준이 없었으나 바젤Ⅲ에서는 연결기준 연매출 5억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고급내부등급법 사용을 불허

3) 연결기준 연매출 5천만유로 미만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는 자본요구량을 하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상관계수 차감)

4) 특수금융의 경우 내부등급법 최소요건 미충족시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

익스포저별 내부등급법 모수값 하한(input floor)

	부도율 (PD)	부도시 손실율(LGD)		부도시 익스포저(EAD)
		무담보부	담보부	
기업 익스포저	5 bp	25%	담보 형태별 차등 적용 - 금융담보 : 0% - 매출채권 : 10% -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 10% - 기타 물적담보 : 15%	난내익스포저 + (난외익스포저 × 신용환산율)
소매 익스포저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5 bp	N/A	5%	
구매대금융 적격 리볼빙	5 bp	50%	N/A	
자금조달용 적격 리볼빙	10 bp	50%	N/A	
기타 소매 익스포저	5 bp	30%	담보 형태별 차등적용 - 금융담보 : 0% - 매출채권 : 10% -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 10% - 기타 물적담보 : 15%	

3. 신용가치조정 리스크 규제체계

- (개요) 중앙청산소에서 거래하지 않은 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하락하면 평가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credit valuation adjustment risk, 이하 CVA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CVA 리스크를 평가하고 상응하는 규제자본을 부과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시 은행이 거래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은행의 손실이 확대

(예시) B기업 채권을 보유한 A은행이 B기업의 신용리스크를 이전하기 위해 C금융사로부터 신용부도스왑을 매입한 상황에서

C금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A은행이 보유한 신용부도스왑의 평가손실이 커질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동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CVA 리스크)를 인식하여 자본을 부과

- (주요 개선내용) CVA 규제체계를 ① 리스크 민감도 ② 강건성 및 ③ 여타 규제체계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

① (리스크 민감도) 규제자본 산정시 전체 익스포저를 각 리스크 요소(이자율, 외환, 신용 등) 별로 나누어 각각의 리스크를 반영

② (강건성) CVA 리스크는 은행의 자체 모형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내부모형법의 사용을 불허*

* 허용되는 규제자본 산정 방법은 ① 표준방법 ② 기본방법(basic approach) 및 ③ 간편법(非중앙청산 파생상품 총액 1,000억유로 미만 은행 대상)으로 구성

③ (여타 규제체계와의 일관성) CVA 리스크도 시가평가에 따라 변동하는 시장리스크의 일종이므로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에서 사용하는 민감도 계산 방식을 토대로 규제자본 산정 방법을 설계

4.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편

□ (개요)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는 신용·시장·유동성 리스크 등을 제외한 금융기관 운영상의 모든 측정 가능한 손실*과 관련된 리스크임

* 내부직원 또는 외부인의 사취행위, 사업장의 안전관리 취약성, 취급상품의 하자, 자연재해,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지급책임, 기업가치 저하 등

□ (주요 개선내용) 기존 운영리스크 표준방법을 새로운 표준방법으로 대체하고 내부모형 기반의 고급측정법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운영리스크 규제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

* 운영리스크 측정시 은행이 내부모형을 사용함에 따라 국가간·은행간 과도한 규제자본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급측정법을 불허

① 은행에게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부손실자료(internal loss data)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동 자료를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표준방법에 반영

② 영업지수*(business indicator, BI)로부터 도출된 적정 규제자본(영업지수 항목)과 내부손실자료로부터 도출된 적정 규제자본(손실 항목)을 가중평균 산식에 대입하여 운영리스크 규제자본을 산출**

* 이자손익, 서비스손익 및 금융거래손익 절대값의 합으로서 은행 영업 규모 측정치임

** 영업 규모가 클수록, 과거에 대규모 운영리스크 손실을 겪을수록 높게 산출

운영리스크 규제자본 산출 방법

	① 영업지수 항목(BI component, BIC)	② 손실 항목(loss component, LC)														
산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지수에 대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영업지수(단위 : 100만유로)</th> <th rowspan="2">계수</th> </tr> <tr> <th>초과</th> <th>이하</th> </tr> </thead> <tbody> <tr> <td>0</td> <td>1,000</td> <td>0.12</td> </tr> <tr> <td>1,000</td> <td>30,000</td> <td>0.15</td> </tr> <tr> <td>30,000</td> <td>∞</td> <td>0.18</td> </tr> </tbody> </table>	영업지수(단위 : 100만유로)		계수	초과	이하	0	1,000	0.12	1,000	30,000	0.15	30,000	∞	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10년간 평균 연간손실액*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출 * 10만유로 이상 규모의 손실사고 대상 - 단, 반복 불가능한 손실사고는 감독 당국의 승인 하에 손실 항목에서 제외 가능
	영업지수(단위 : 100만유로)		계수													
초과	이하															
0	1,000	0.12														
1,000	30,000	0.15														
30,000	∞	0.18														
가중 평균 산식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리스크 규제자본 = BIC · ILM</p> <p>(단, 내부손실 승수(internal loss multiplier, ILM)는 손실 항목(LC)이 영업지수 항목(BIC)보다 클 경우 1 이상, 작을 경우 1 이하의 값으로 산정되며, 각국 감독 당국의 재량으로 승수를 1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p>															

5.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개편

□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은행 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됨

* 호황기의 **저리스크·高수익**률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확대한 은행들이 위기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에 나설 경우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

$$\text{레버리지비율} = \frac{\text{기본자본(Tier 1 자본)}}{\text{총익스포저(난내항목 + 난외항목)}} \geq 3\%$$

○ 레버리지비율은 난내·외 항목의 명목가액(총익스포저)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본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

*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들이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하여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

□ (주요 개선내용) ①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추가 레버리지비율을 부과**하고 ② **총익스포저 항목의 산출 방식 등을 일부 수정**

① **G-SIB에 대한 추가 레버리지비율 부과** : G-SIB의 손실흡수력 제고 등을 위한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본규제의 **추가 자본 부과 규정***을 레버리지비율 규제에도 도입하여 **양 규제 체계간 일관성을 유지**

* G-SIB을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저 1%부터 0.5%p씩 증가하도록 추가 자본을 구간별로 차등 부과(1.0~2.5%)

구 간	1	2	3	4	5(예비)
추가 자본(%)	1.0%	1.5%	2.0%	2.5%	3.5%

- 단, 레버리지비율 규제에서는 G-SIB 추가 자본(1.0~2.5%)의 **50%** (0.5%~1.25%)를 **기본자본(Tier 1)**으로 적립

$$\text{G-SIB의 레버리지비율} = 3\% + \frac{1.0 \sim 2.5\%}{\text{G-SIB 추가 자본}} \times 50\%$$

* G-SIB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본규제의 추가 자본은 **보통주 자본(CET1)**으로 적립해야 하나 추가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으로 적립

- G-SIB이 추가 레버리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분(배당, 주식 환매,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본규제와 유사하게 운영

G-SIB 최저자본보전 비율

(G-SIB 추가 자본 1% 및 추가 레버리지비율 0.5%인 경우)

보통주자본 비율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본규제)	레버리지비율 (기본자본 기준)	최저자본보전 비율 (이익 유보율)
4.5% ~ 5.375% 미만	3% ~ 3.125 ¹⁾ % 미만	100%
5.375% ~ 6.25% 미만	3.125% ~ 3.25% 미만	80%
6.25% ~ 7.125% 미만	3.25% ~ 3.375% 미만	60%
7.125% ~ 8.0% 미만	3.375% ~ 3.5% 미만	40%
8.0% ²⁾ 이상	3.5% 이상	0%

- 주 : 1)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본규제의 보통주자본 비율에 비례하여 산출
(예) 3.125% = 최저 레버리지비율(3%) + 추가 비율(0.5%) ÷ 구간수(4)
- 2) 최저 보통주자본 비율(4.5%) + 자본보전완충자본(2.5%) + G-SIB 추가 자본(1%)
- 3) 보통주자본 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다 높은 최저자본보전 비율을 적용

- ② 총익스포저 항목의 산출 방식 등 일부 수정 : 규제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난외자산 및 파생상품 익스포저 산출 방식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과 동일하게 변경

6. 자본하한

- (개 요) 은행의 내부모형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가중자산(규제자본) 산출 규모의 국가간·은행간 편차를 해소하고 위험가중자산 파소 산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하한(output floor) 산출 방식을 바젤 I 기반(80%)에서 바젤 III 표준방법 기반(72.5%)으로 변경

위험가중자산 = MAX	① 감독당국이 승인한 방법(내부모형법 및 표준방법 모두 포함)으로 산출한 총위험가중자산
	② 표준방법만으로 산출한 총위험가중자산 × 72.5%

- 자본하한 산출 목적의 위험가중자산은 리스크별로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하고 동 내역을 공시해야 함

7. 경과 규정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이행 일정과 자본하한 경과 규정은 다음과 같음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이행 일정 및 자본하한 경과 규정

대상 규제		이행 일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 2022.1.1일
	내부등급법 개정안	• 2022.1.1일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 2022.1.1일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 2022.1.1일
레버리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익스포저 개념 : 2018.1.1일 • 개정 익스포저 개념 : 2022.1.1일 • G-SIB 추가 비율 : 2022.1.1일
자본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1일 : 50% • 2023.1.1일 : 55% • 2024.1.1일 : 60% • 2025.1.1일 : 65% • 2026.1.1일 : 70% • 2027.1.1일 : 72.5%

- 하한 적용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 증가폭이 **자본하한 적용전 위험가중 자산 규모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transitional cap)**을 경과 기간중(2022~2026년)에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국별 감독당국에 부여

* 국별로 자본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수준을 강화하거나 규제개혁을 합의된 이행 일정보다 먼저 도입하는 것도 허용됨